

## 「자동차관리법」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1. 「자동차관리법」 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7조,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
2.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다 음

가. 공 고 명: 「자동차관리법」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 
공시송달 공고

나. 공고기간: 2023. 2. 22.(수) ~ 2023. 3. 8.(수) (15일간)

다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
라. 공고대상:

성 명	주 소	납부 금액	공시 송달 공고 사유
김 * 준	서귀포시 보목로*0번길 2*-(보목동)	과태료: 30,000원 가산금: 3,060원	폐문부재

3.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 규정에 따라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**2023. 2. 22.**

송 산 동 장

